●금융위원회공고 제2021-335호

비영리법인 행정처분(설립허가 취소) 공고 (공시송달)

「민법」제38조 및 「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제10조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하였으나,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10일

금융위원회 위원장

1. 처분내용 :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

2. 취소 일자 : 2021. 9. 7.

3. 근거법규 : 「민법」 제38조(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) 및 「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

감독에 관한 규칙」제10조(설립허가의 취소)

4. 처분 당사자 (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상 : 8개 법인)

법인 명	법인번호	주소	구분
한국CEO포럼	110121-00340**	서울 영등포구	사단법인
글로벌파이넌스포럼	254121-00180**	서울 영등포구	사단법인
청정금융포럼	114321-00327**	서울 관악구	사단법인
한국경영재무사례학회	110321-00439**	서울 서대문구	사단법인
한국금융리스크관리전문가협회	110121-00340**	서울 마포구	사단법인
파생시장협의회	110121-00436**	서울 마포구	사단법인
자산운용연구원	110121-00370**	서울 중랑구	사단법인
국제금융포럼	184721-00014**	부산 금정구	사단법인

5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: 설립허가 조건 등 위반

-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서 미제출
-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

6. 기타사항

-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소송법」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소송 또는 「행정심판법」의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(02-2100-280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